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2026.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확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5명(고위공무원나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가시험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대통령집무실과”를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로 하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을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관리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3.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4.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42”를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2”을 “141”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0”으로 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을 “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을 “1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2”를 “3”으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을 “3”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55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 중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을 “별표 2의2의 정원 2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명)”으로 하고, “정원 중 1명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을 “정원 중 2명(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28일”을 “2028년 12월 28일”로 하고, 제3조 중 “2026년 12월 28일”을 “2028년 12월 28일”로, “2026년 12월 29일”을 “2028년 12월 2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28일)

총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신 설>	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
② 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관리	③ -----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삭 제>
10.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삭 제>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11.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④ 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관리		국토교통부령 제12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시범도시팀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3. 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명)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5. 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8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42	141	-1
·	·	·	
·	·	·	
일반직 계	141	140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	8	7	-1
·	·	·	
·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2</u>	<u>141</u>	-1
·	·	·	
·	·	·	
일반직 계	<u>141</u>	<u>140</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	<u>8</u>	<u>7</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u>	<u>13</u>	+6
일반직 계	<u>7</u>	<u>13</u>	+6
고위공무원단	<신 설>	<u>1</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 기관	<u>1</u>	<u>2</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방송통신사 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u>3</u>	<u>4</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 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u>2</u>	<u>3</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 전주사보 · 방송통신주 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1</u>	<u>3</u>	+2